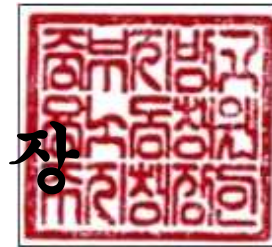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2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·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명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양O용	1993.11.07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인정 철회 · 취업지 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· 취업지원서비스 종료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 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보관기관 경과만송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9.29. ~ 2026.10.1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조병희(Tel. 033-769-09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